

『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(안)에 대한 의견청취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7월 7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7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7월 18일

제21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설 동 주

나. 제안이유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(2013.6.4.)에 의하여 물리적 정비에 주력했던 기존 도시개발 정책에서 쇠퇴한 원도심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 지원정책이 마련됨에 따라,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시의 유형·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·발굴·활용하여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“도시재생전략계획”을 수립하고자 하며, 동법 제15조 1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함.

다. 주요내용

- 계획의 목표 및 범위
-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
- 쇠퇴진단 및 물리적·사회적·경제적·문화적 여건 분석
-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
-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
- 도시재생지원센터,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
- 중앙·지방 정부 재정 지원 및 민간투자유치 등 자원 조달 계획
- 지원조례, 협정지침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
-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
-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수립하는 사업 계획

라. 참고사항

○ 추진경위

- 2016. 09. 28. :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 착수
- 2016. 10. 13. : 착수보고회 개최
- 2016. 12. 15. : 1차 자문회의 개최
- 2017. 02. 23. : 2차 자문회의 개최
- 2017. 04. 03. : 중간보고회 개최
- 2017. 07. 11. : 주민공청회 개최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영 수

○ 본 「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(안)에 대한 의견청취」는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시된 안건으로, 쇠퇴한 원도심을 사회·경제·문화·환경적으로 회복시키는 효율적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
- 향후 재생사업을 통하여 주민공동체 회복, 지역상권활성화 및 원도심 정주환경 개선 등 원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계획이라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찬성의견

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(안)에 대한 의견청취

의견서

□ 주요개요

○ 계획의 목적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함
- 도시재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 전체에 대한 도시재생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
- 쇠퇴된 도심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의 품격을 높이고 정부 및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전략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

○ 계획의 범위

- 공간적 범위 : 구미시 시가화 용지 58.2km²
- 시간적 범위 : 기준년도 2016년, 목표년도 2025년

○ 기본구상

- 원도심 활성화
- 지역공동체 활성화
- 역사문화자원 발굴
- 산업환경 개선

□ 의견사항

○ 찬성의견 채택으로,

노후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이 아닌 사회·문화를 중시하는 복합적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.